|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시오.  6. 법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7. 종합소득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문제 1】(14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그린출판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만을 운영하다가, 2013년 5월 1일부터 사옥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  |
| --- |
| < 자료 >  1. 사옥은 2011년 2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건물 및 부수토지를 1,0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구입하여,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에만 사용하다가 2013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① 도서출판업에 사용 면적 : 3,900m2  ②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면적 : 2,100m2  ③ 건물의 바닥면적 : 1,000m2  ④ 부수토지의 면적 : 1,500m2  2.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내역  (1) 도서출판업 50,000,000원  (2) 부동산임대업  ① 임대기간 : 2013년 5월 1일∼2014년 4월 30일  ② 월임대료 :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전월 말일에 받기로 되어 있다. 2013년 제1기 중에 실제로 받은 임대료는 33,000,000원이다.  ③ 계약일 : 2013년 4월 1일로 이날 5월분 임대료를 받았다.  ④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2013년 5월 1일 입주시에 받았다.  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이다.  3. 201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매입내역(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① 건물 전체 경비용역비 11,000,000원  ② 도서 제작용 종이 구입비 22,000,000원  ③ 임대용 사무실 수리비 33,000,000원  ④ 도서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44,000,000원  ⑤ 건물 전체의 전기료 5,500,000원. 계량기에 의하면 이중 50%는 임대사무실에서 발생한 전기료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전기료를 받지는 않는다. |

**(물음 2)** ㈜블루출판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최근 자금난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사옥을 매각하였다. 201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사옥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  |
| --- |
| < 자료 >  1. 사옥의 구성 내역 및 사용내역  ① 도서출판업에 사용한 면적 : 3,900m2  ②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면적 : 2,100m2  ③ 건물의 바닥면적 : 1,000m2  ④ 부수토지의 면적 : 1,500m2  2. 사옥의 매각 내역  건물과 부수토지의 매각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였다.  ① 2012년 8월 8일 계약금 100,000,000원 수령  ② 2012년 10월 8일 중도금 400,000,000원 수령  ③ 2013년 3월 8일 잔금 500,000,000원 수령 및 건물 인도  ④ 2013년 4월 1일 소유권 이전등기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건물가액과 부수토지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과거 사옥의 신축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았다.  4. 직전기 및 당기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은 각각 40:60 및 30:70 이다.  5. 토지와 건물의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기준시가 | 감정평가액 | | 토지 | 400,000,000원 | 405,000,000원 | | 건물 | 400,000,000원 | 495,000,000원 | |

**(물음 3)** 공인회계사인 정회계는 2013년 7월 20일에 ㈜레드산업에서 작성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다음 사항에 포함된 오류는 회사 직원의 세법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오류가 아니다.

|  |
| --- |
| < 발견사항 >  1. 2013년 3월 31일에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3월 말일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원씩 총 11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하여 3월 31일에 공급가액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으며, 2013년 4월 25일 예정신고를 하면서 동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회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상품을 인도받았고, 2013년 1월 28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3년 1월 28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 2,000,000원을 2013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고 공제받았다.  3. 회사는 2013년 1월 20일에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상품을 인도받았고, 2013년 2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3년 2월 25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 3,000,000원을 2013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고 공제받았다. |

**<요구사항 1>**

회사는 위 발견사항에 포함된 오류를 2013년 7월 25일에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 하고자 한다. 예정신고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가산 또는 차감되어야 할 금액을 다음 양식으로 답하시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수정사항 없음”과 그 이유를 적으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구 분 | 수정 방향 | 수정 세액 | 이 유 |
| 발견사항 1 | (예시)  매출세액 차감 | (예시)  500,000 |  |
| 발견사항 2 |  |  |  |
| 발견사항 3 |  |  |  |

**<요구사항 2>**

2013년 7월 25일에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 한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각 가산세별로 구분하여 다음양식으로 답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가산세의 종류 | 계산식 | 가산세액 |
|  |  |  |
|  |  |  |
|  |  |  |
|  |  |  |
| 계 |  | ⨯⨯⨯ |

**【문제 2】(6점)**

다음은 정육점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간겸영씨의 2013년 과세기간(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 과세기간 공급대가  (단위: 원)   |  |  |  | | --- | --- | --- | | 구 분 | 정육점업 | 음식점업 | | 영수증 발행분 | 3,000,000 | 8,000,00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7,000,000 | 22,000,000 | | 계 | 10,000,000 | 30,000,000 |   2. 과세기간 매입액  (단위: 원)   |  |  |  | | --- | --- | --- | | 구 분 | 정육점업 | 음식점업 | | 세금계산서 수취 |  | 2,200,000\*1 | | 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  | 3,300,000\*1 | | 계산서 수취 | 4,000,000 | 10,000,000\*2 | | 계 | 4,000,000 | 15,500,000 |   \*1 음식에 사용되는 부재료 매입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이다.  \*2 음식점업의 계산서 수취액 10,000,000원은 음식재료인 면세농산물 구입액이다.  3. 2012년 5월 5일에 배달용 트럭을 11,000,000원에 구입하여 정육점과 음식점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 6월 6일 8,000,000원에 매각 하였다. 2013년 7월 7일에 새트럭을 22,000,000원에 구입하여 정육점과 음식점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트럭의 거래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며,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직전 과세기간의 정육점업과 음식점업의 공급대가 비율은 30:70 이다.  5. 당기 예정부과기간 고지납부세액은 300,000원이다.  6.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다. |

**(물음 1)** 간겸영씨의 2013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2)**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양식으로 간겸영씨의 공제세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세액공제의 종류 | 계산식 | 공제세액 |
|  |  |  |
|  |  |  |
|  |  |  |
| 계 |  | ⨯⨯⨯ |

**(물음 3)** 차가감납부할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하고,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또는 얼마가 환급되는지) 설명하시오.

**【문제 3】(27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자료>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였다.

**(물음 1)** 중소기업인 ㈜대한의 제13기 사업연도(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 당기 결산서상 손익계산서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당기순이익은 45,000,000원이며, 당기 법인세 비용은 5,000,000원이다.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는 20,000,000원이며,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3)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5,000,000원이다.  (4)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소모품비 11,000,000 (대) 현금 11,000,000  (5)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일자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1.15. | 천재지변 구호금품 | 10,000,000 |  | | 3. 2. | 사회복지  시설 기부금\*1 | 7,000,000 |  | | 10. 3. | 사립 대학교 장학금 | 30,000,000 |  | | 11.10. | 종교단체  기부금 | 17,000,000 | - 냉장고 기부  (장부가액 17,000,000  시가 19,000,000)  - ㈜대한과 특수관계 있는 종교단체임 | | 12.30. | 장학단체 기부금\*2 | 2,000,000 | - 어음기부금  (결제일 2014.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월 2일자 기부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이다.  \*2 12월 30일자 기부금은 정부허가를 얻은 장학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다.  (6)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내용 | 2011년 | 2012년 |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4,200,000 | 7,600,000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300,000 | 4,200,000 |   2. 당기초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은 7,500,000원이고, 그 중 5,000,000원은 2008년(제8기) 발생액이며, 2,500,000원은 2010년(제10기) 발생액이다. |

(답안 양식)

(단위: 원)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 |
| … | … |
|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 ⨯⨯⨯ |
| … | … |
| 차가감소득금액 | ⨯⨯⨯ |
| … |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물음 2)** 비상장 내국법인 ㈜민국의 제13기(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  |
| --- |
| < 자료 >  1. ㈜민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2012년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2013년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2013년 9월 30일에 총평균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전기말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재고자산 금액은 5,000,000원이고, 당기초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6,000,000원이며, 당기초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7,000,000원이다.  2. 2012년 9월 30일에 금융기관이 확인한 부도어음을 비용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손금 전기말 유보액이 10,000,000원이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원 포함)이 있는데, 이중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민국은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3. 2013년 2월 20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한 방식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임원분 25,000,000원, 직원분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제13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은 30,000,000원이고, 전기 및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각 3,000,000원과 4,500,000원이고, 전기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이 4,000,000원 있다.  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으로 90,000,000원과 보험수리기준으로 70,000,000원이다.  ③ 제13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원) | | | | | 기초잔액 | 4,000,000 | 당기지급액 | 2,000,000 | | 당기납부액 | 10,000,000 | 기말잔액 | 12,000,000 |   ④ ㈜민국의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은 전기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당기분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 |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물음 3) 중소기업인 ㈜대한의 제10기(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부터 제13기(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 기계장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사업연도 |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 추가사항 | | 10기 | 2,500,000 | 2010년 10월 1일에 기계장치를 20,000,000에 취득 | | 11기 | 3,000,000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3,500,000을 지출하고 수선비로 처리 | | 12기 | 4,500,000 |  | | 13기 | 5,000,000 |  |   2.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1) 기준내용연수 : 5년  (2) 상각방법 및 상각률   |  |  |  |  | | --- | --- | --- | --- | |  | 4년 | 5년 | 6년 | | 정액법 | 0.250 | 0.200 | 0.166 | | 정률법 | 0.528 | 0.451 | 0.327 |   3. ㈜대한은 설립 이후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다.  4. 당기말에 기계장치를 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

**<요구사항 1>**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제10기부터 제13기까지의 연도별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사업연도 | 계산근거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 10기 |  |  |
| 11기 |  |  |
| 12기 |  |  |
| 13기 |  |  |

**<요구사항 2>**

㈜대한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제13기에 기계장치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답하시오. ㈜대한은 2013년에 기계장치의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회계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와 당기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답안 양식에 따라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  |
| --- |
|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대) 회계변경누적효과 2,000,000원  (이익잉여금)  (차) 감가상각비 3,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원 |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물음 4) 중소기업이 아닌 ㈜민국의 제13기 사업연도(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800,000,000원(국외 특수관계자 매출액 200,000,000원 포함), 법인세비용은 30,000,000원, 당기순이익은 200,000,000원이다.  2. 국내 매출액에는 매출할인이 5,000,000원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매출액 50,000,000원(매출원가 20,000,000원)이 누락되었다.  3. 공익신탁재산소득 1,000,000원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  4. 2013년 1월 1일에 국고보조금 5,000,000원을 받아서 2013년 1월 29일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장부상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신고하고, 감가상각비는 2,000,000원을 계상하였다.  5.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20,000,000원(적격증빙 수취)이다.  6.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00원과 자기주식소각이익 3,500,000원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자기사채소각이익 4,000,000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7. 제7기(2007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3,000,000원과 제8기(2008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4,500,000원이 있다.  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300,000원이다.  9. 국외원천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 | | 100,000,000\*1 | 54,000,000 | 7,000,000 |   \*1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원천납부세액은 1,800,000원이며, 중간예납세액은 1,200,000원이다.  11.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적용률 | | 100억원 이하 | 2/1,00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1,000 | | 500억원 초과 | 0.3/1,000 | |

**<요구사항 1>**

㈜민국의 제13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답안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단위: 원)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 |
| … | … |
|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 ⨯⨯⨯ |
| … |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 |
| 과세표준 | ⨯⨯⨯ |

**<요구사항 2>**

㈜민국의 제13기 법인세 과세표준이 27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답안 양식에 따라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 및 최대분납가능세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단위: 원)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산출세액 | ⨯⨯⨯ |
| … | … |
| 총부담세액 | ⨯⨯⨯ |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최대분납가능세액 | ⨯⨯⨯ |

**【문제 4】(12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다음은 비상장기업인 ㈜해인의 유상감자에 대한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 ㈜해인의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 감자전 1주당 평가액은 5,000원이었다.  2. ㈜해인의 유상감자 내역  (단위 : 주)   |  |  |  |  | | --- | --- | --- | --- | | 주주 | 감자전  주식수 | 감자  주식수 | 감자후  주식수 | | 갑법인 | 500 | 250 | 250 | | 을법인 | 200 | - | 200 | | 병법인 | 200 | 100 | 100 | | 정법인 | 100 | 50 | 50 | | 합계 | 1,000 | 400 | 600 |   3.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그 외의 특수관계인은 없다. |

**<요구사항 1>**

㈜해인이 감자대가로 1주당 2,000원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주주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단, 세무조정이 없는 주주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할 것.

**<요구사항 2>**

㈜해인이 감자대가로 1주당 7,000원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주주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단, 세무조정이 없는 주주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할 것.

**<요구사항 3>**

㈜해인이 감자대가로 1주당 6,000원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주주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단, 세무조정이 없는 주주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할 것.

**(물음 2)** 비영리내국법인인 영솔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다. 다음은 영솔법인의 제12기(2013년 1월 1일∼12월 31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자료이다.

|  |
| --- |
| < 자료 >  1. 영솔법인의 제12기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200,000,000원이다.  2. 영솔법인의 제12기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100,000,000원  ㉡ 연구 및 개발업(비상업용) : 50,000,000원  ② 이자소득  ㉠ 예금이자 : 70,000,000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30,000,000원  ③ 배당소득  ㉠ 주권상장법인인 A사 배당 : 30,000,000원  ㉡ 투자신탁(집합투자증권) 이익 : 20,000,000원  ④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2년 동안 사용)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200,000,000원  ⑤ 파생상품매매익 : 30,000,000원  3. 영솔법인의 제12기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은 100,000,000원이고, 제11기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50,000,000원이다. |

**<요구사항 1>**

영솔법인의 제12기 수익사업소득금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금 액 |
| ① 사업소득 |  |
| ② 이자소득 |  |
| ③ 배당소득 |  |
| ④ 고정자산 처분수입 |  |
| ⑤ 파생상품 매매익 |  |
| 합 계 |  |

**<요구사항 2>**

영솔법인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을 500,00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구하시오. 단, 영솔법인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았다.

**<요구사항 3>**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사유를 3가지 이상 쓰시오.

**【문제 5】(8점)**

다음은 제조업(대표이사 홍산천)을 영위하는 ㈜산천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당기 사업연도는 제15기(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 과세관청이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산천의 제14기(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천은 제14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다.  ① 200,000,000원의 현금 매출누락이 적발되었으며 관련 매출원가는 허위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홍산천(거주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  ②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된 100,000,000원은 주주인 김영수(거주자)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다.  2. 2013년 12월 23일에 과세관청이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제14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  |  |  | | --- | --- | --- | | 소득종류 | 소득금액 | 성명 | | 상여 | 200,000,000원 | 홍산천 | | 배당 | 100,000,000원 | 김영수 |   3. 2013년 12월 27일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산천에게 발송하였으며, ㈜산천은 2013년 12월 29일에 이를 수령하였다.  4. 과세관청은 ㈜산천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홍산천과 김영수에게 각각 2014년 1월 3일 및 2014년 1월 6일에 통보하였다.  5. 2013년 12월 28일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 따라 증액경정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산천에게 발송하였으며, ㈜산천은 2013년 12월 31일에 이를 수령하였다. |

**(물음 1)**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에 대한 ㈜산천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예 : 2013년 12월 5일)와 근거를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내용 | 일자 | 근거 |
| ① 성립시기 |  |  |
| ② 확정시기 |  |  |
| ③ 납부기한 |  |  |

**(물음 2)**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홍산천과 김영수의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납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예 : 2013년 12월 5일)와 근거를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내용 | 일자 | 근거 |
| 홍산천 |  |  |
| 김영수 |  |  |

**(물음 3)** ㈜산천이 위의 세무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고지된 법인세에 대하여 ①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② 만약 불복청구가 가능하다면 불복청구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예 : 2013년 12월 5일)를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내용 | ① 불복청구 가능여부 | ② 불복청구  기한 |
| 소득금액변동통지 |  |  |
| 법인세 납세고지 |  |  |

**(물음 4)**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조세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과 그 내용을 3줄 이내로 쓰시오.

**【문제 6】(6점)**

다음은 ㈜산돌의 제19기(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 ㈜산돌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주 주 | 지분율 | | 김철원(거주자) | 20% | | 이영희(거주자) | 10% | | ㈜한돌 | 60% | | ㈜두돌 | 10% |   2. 이영희는 김철원의 배우자이며 ㈜한돌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다.  3. ㈜산돌의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거래처 | 매출액 | | ㈜한돌 | 50,000,000,000원 | | ㈜일군 | 30,000,000,000원 | | ㈜이군 | 20,000,000,000원 | | 합 계 | 100,000,000,000원 |   4. ㈜한돌과 ㈜일군은 ㈜산돌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5. ㈜산돌의 제19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합계액은 70,000,000,000원이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각각 20,000,000,000원 및 10,000,000,000원이다.  6. ㈜산돌의 제19기 세무조정사항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1,000,000,000원,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2,000,000,000원이다.  7. ㈜산돌의 제19기의 법인세 결정세액은 8,000,000,000원이다. |

**(물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 ㈜산돌의 지배주주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지배주주 지분율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얼마인지를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지배주주 |  |
| 납세의무자 |  |
| 지배주주 지분율 |  |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

**(물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시오.

**(물음 3)** 세후영업이익을 30,000,00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계산시 증여의제이익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  |
| 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  |
| 합 계 |  |

**【문제 7】(19점)**

**(물음 1)** 다음은 거주자 이철수의 2013년도 소득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자료 >  1.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적 금전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3,000,000원  ② 15년 만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액 1,000,000원을 2014년 1월 20일에 수령 (동 저축성보험은 2010년 초에 가입하여 2013년 12월 20일에 임의 해지하였으며, 총불입액은 800,000원이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해지사유 : 해외이주, 총납입액 25,000,000원)로 인한 환급액 30,000,000원  ④ 주권상장법인 A사의 주식(액면금액 5,000원)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로부터 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이철수는 A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000,000원  ⑥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10,000,000원  ⑦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1,000,000원  ⑧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  ⑨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500,000원  2.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철수는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  (2)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수입금액 30,000,000원  ② 올해 우수대리점으로 선정되어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 1,000,000원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신형 핸드폰(A) 50개(취득원가 개당 200,000원 판매가액 개당 300,000원)를 수령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예금이자 수익 3,000,000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000,000원  ④ 종업원 급여 10,000,000원 (판매부장인 장남의 급여 5,000,000원 포함), 사업용 기계장치 임차비용 3,000,0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000,000원  ⑤ 신형 핸드폰(B) 20개(취득원가 개당 150,000원, 시가 개당 250,000원)를 가사용으로 소비  (3)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은 전년도에 차입한 금액으로, 연도 중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 | 차입금적수 | | 18% | 1,800,000원\*1 | 10,000,000원 | 3,650,000,000원 | | 10% | 600,000원 | 6,000,000원 | 2,190,000,000원 | | 5% | 280,000원 | 5,600,000원 | 2,044,000,000원 | | 합계 | 2,680,000원 | 21,600,000원 | 7,884,000,000원 |   \*1 18%이자율의 지급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이다.  2013년 중 30일 동안 부채의 합계가 자산의 합계를 초과하였으며, 동 기간의 사업용 자산 합계액은 5억원이며 부채의 합계액은 8억원(충당금 2억원 포함)이다.  3. 상기 이외의 다른 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②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2,000,000원  ③ 슬롯머신 당첨금 3,000,000원 (당첨당시 투입금액 5,000원)  ④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500,000원  ⑤ 주택입주지체상금 2,000,000원  ⑥ 상가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5,000,000원 |

**<요구사항 1>**

종합소득공제가 8,000,000원일 때, 자료의 1번 사항을 이용하여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④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금 액 |
| ① 이자소득금액 |  |
| ② 배당소득금액 |  |
|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④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요구사항 2>**

자료의 2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3년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금 액 |
| 당기순이익 | 50,000,000 |
| 총수입금액 산입 |  |
| 필요경비 불산입 |  |
| 필요경비 산입 |  |
| 총수입금액 불산입 |  |
| 사업소득금액 |  |

**<요구사항 3>**

자료의 3번 사항을 이용하여 2013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구 분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물음 2)** 다음은 거주자 김영희(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자료 >  1. 2013년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금액 60,000,000원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0,000,000원  2. 가족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여, 48세)  ② 장남(22세) : 장애인이며, 총급여액은 5,000,000원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차녀(17세) : 취학상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④ 위탁아동(5세): 2013년 중 6개월 이상 양육하였으며, 소득은 없다.  3. 2013년 납부 및 출자내역  ① 국민건강보험료 3,000,000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4,000,000원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5,000,000원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250,000,000원  김영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아니며, 2013년 기부금특별공제항목은 없다.  4. 2013년 10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용 자산 3,000,000원이 상실되어(자산상실비율 25%)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5.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 |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 1천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4천500만원 초과 | 1천275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 요구사항 1 >**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거주자 김영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분 | 금액 |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요구사항 2 >**

거주자 김영희의 산출세액이 5,0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적용가능한 세액공제액과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금 액 |
| ① 세액공제액 |  |
|  |  |
|  |  |
| ② 종합소득 결정세액 |  |

**【문제 8】(8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거주자 갑은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겸용주택(단층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였다.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주택면적은 30m2이고 상가면적은 70m2 이다.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400m2이며,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다. 단,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 실지양도가액  (양도일: 2013. 7. 1.)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감정가액  (감정일: 2013. 7. 15.) | | 겸용주택 | 200,000,000 | 90,000,000 | 100,000,000 | | 부수토지 | 100,000,000 | 150,000,000 |     3.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 취득일자 | 실지취득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겸용주택 | 2010. 3. 20. | 70,000,000 | 60,000,000 | | 부수토지 | 2007. 12. 1. | 50,000,000 | 40,000,000 |   4.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2,250,000원이다. 그리고 매수자의 요구로 겸용주택을 철거하게 되어 철거비용 1,000,000원이 지출되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은 10%, 4년이상 10년미만은 보유연수× 3%, 10년이상은 30%이다. |

**(물음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 자산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1주택 소유자인 거주자 을은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2013년 11월 3일에 출국하였다. 이에 따라 보유중인 자산을 출국 전에 전부 처분하였으며, 2013년에 처분한 자산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양도차익(△차손) | 보유기간 | 등기여부 | 처분일자 | | 토지A | 140,000,000 | 5년 2개월 | 미등기 | 6월 3일 | | 토지B | △20,000,000 | 1년 3개월 | 등기 | 10월 20일 | | 건 물 | 60,000,000 | 2년 8개월 | 등기 | 3월 2일 | | 주 식 | 20,000,000 | 2년 7개월 | 등기 | 7월 1일 | | 주 택 | 19,000,000 | 1년 6개월 | 등기 | 10월 25일 |   토지A와 토지B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과세표준 |
| 토지 A |  |
| 토지 B |  |
| 건 물 |  |
| 주 식 |  |
| 주 택 |  |

**- 끝 -**